

신구조문대비표
「관세법 시행령」

| 관세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3388호, 2023. 4. 11., 타법개정] | 관세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3913호, 2023. 12. 12., 타법개정] |
|--|--|
| <p>제285조의7(과징금의 납부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 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 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·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 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| <p>제285조의7(과징금의 납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 부해야 한다. <단서 삭제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|